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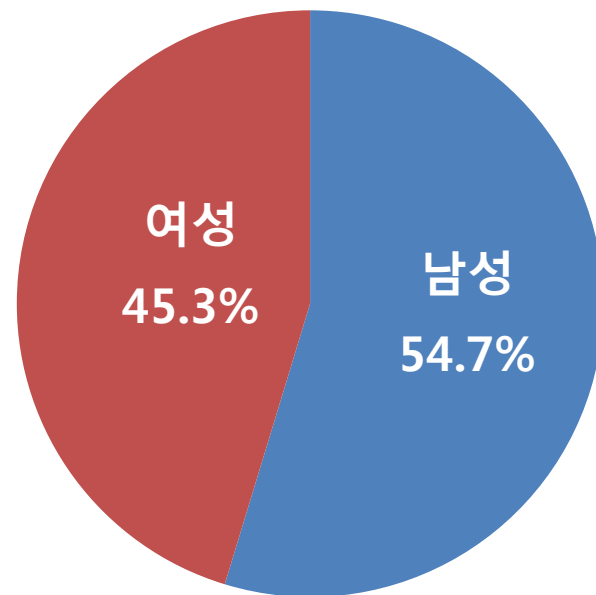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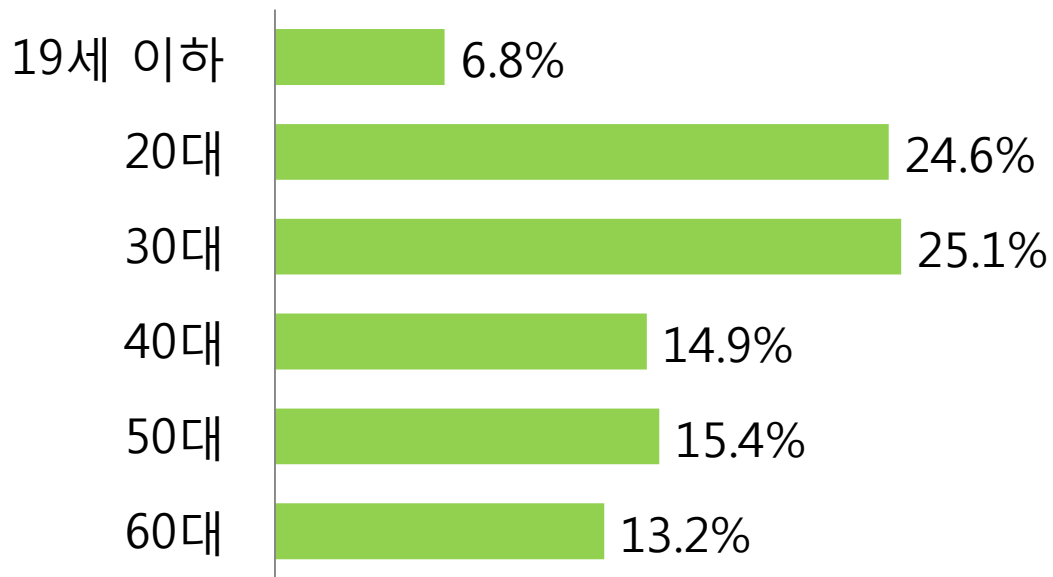
이주민 건강, 건강보험제도와 그 너머

김 사 강



이주민은 누구인가

- **외국 국적 이주민 : 173만 명**
(총 체류외국인 252만 명 중 장기체류자)
- 국적 취득 이주민 : 18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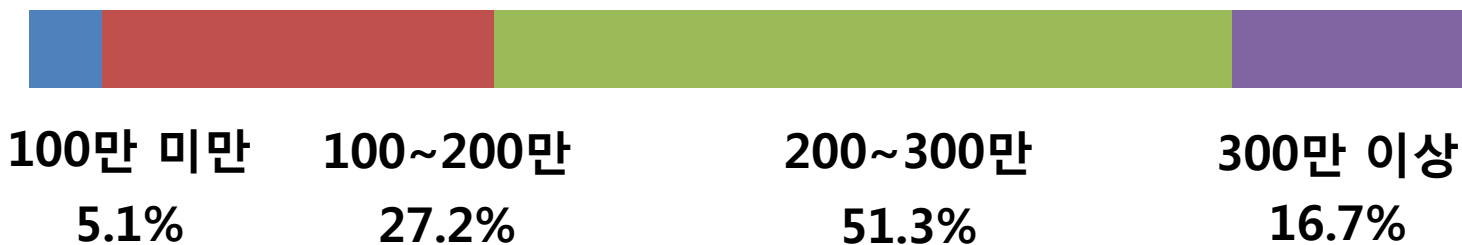
중국	베트남	미국	우즈벡	필리핀	캄보디	네팔	러시아	인니	태국
51.1%	10.8%	4.1%	3.9%	2.6%	2.6%	2.4%	2.3%	2.2%	1.9%

이주민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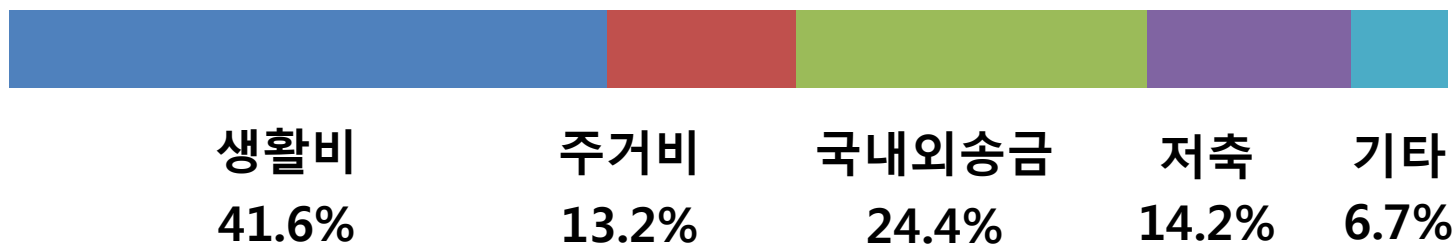
경제활동



월임금



소비활동



※ 2018년 이주민이 낸 세금 : 근로소득세 57만여 명 7,836억 원
 종합소득세 8만여 명, 3,81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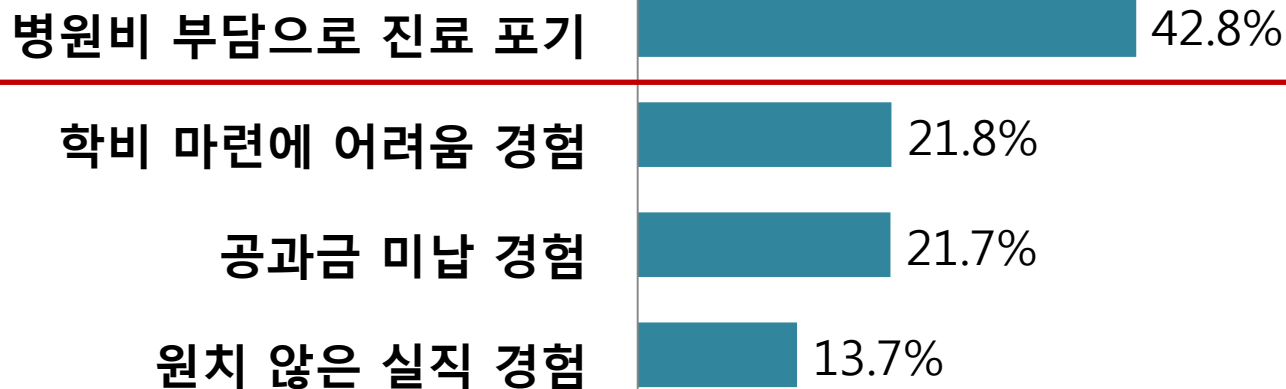
이주민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 2

가구구성



- 평균 가구원 수 2.8명
- 배우자 국내 거주 42.6%
- 자녀 국내 거주 34.3%

경제적 어려움



※ 2018년 장기 합법 체류 이주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40% 이상

2006.1.1.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 7590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 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5. 7. 13>

2016.3.22.부터
신청에 의한
지역가입 허용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 14084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 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3.22>



보도자료

6월 7일(목) 회의 종료 후 보도

배 포 일	2018. 6. 7. / (총 4 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 장	정 경 실	전 화	044-202-2710
	담 당 자	유 미 란		044-202-2706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 장	이 덕 룡		02-2110-4055
	담 당 자	김 명 훈		02-2110-4062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과 장	진 재 훈		02-3703-2054
	담 당 자	정 진 필		02-3703-2055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민간 형평성은 높인다!

-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

개정 내용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지역가입 신청 시 필요한 국내 거주기간 연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내국인과 동일한 지역가입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가족동반, 거주, 영주, 결혼이민에서 영주와 결혼이민만)

가족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등록 요건 강화

지역가입 동일 세대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

보험료 체납 이주민 출입국 심사 불이익



보건복지부

사이언스
투데이

건강보험 '먹튀' 방지...외국인 체류 강화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차별적 개정의 근거 1

외국인은 지역가입 후 최초진료까지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일시 가입 후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하는 사례가 빈발해 가입 조건을 입국 후 6개월로 늘릴 필요 있음

○ 외국인 등 건보적용 실태점검(국무조정실 합동) 결과 확인된 주요 사례 참조

적발 사례	상세 내용
외국인 (지역가입자) 진료목적 가입	외국인 A씨는 '14년 10월 입국하여, '17년 2월 악성종양이 발생하자 건강보험에 가입 후 진료를 받고 자격취득 7개월 뒤 보험료 미납으로 자격 상실 (5900만원 공단부담액 발생)
외국인(피부양자) 진료목적 입국	외국인 B씨는 지병(심장병)이 악화되자 진료목적으로 '16년 6월 초 입국하여 국내 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후 22일간 입원 진료를 받고 가입 2개월 후인 '16년 8월 출국으로 자격상실 (3500만원 공단부담액 발생)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차별적 개정의 근거 2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 재정수지는 4,541억 흑자, 지역가입 재정수지는 2,051억 적자로 지역가입 보험료 조정 불가피

그러나,

2017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은 4조 4,750억 적자

vs. 외국인 건강보험은 2,490억 흑자

2018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은 4조 7,759억 적자

vs. 외국인 건강보험은 2,346억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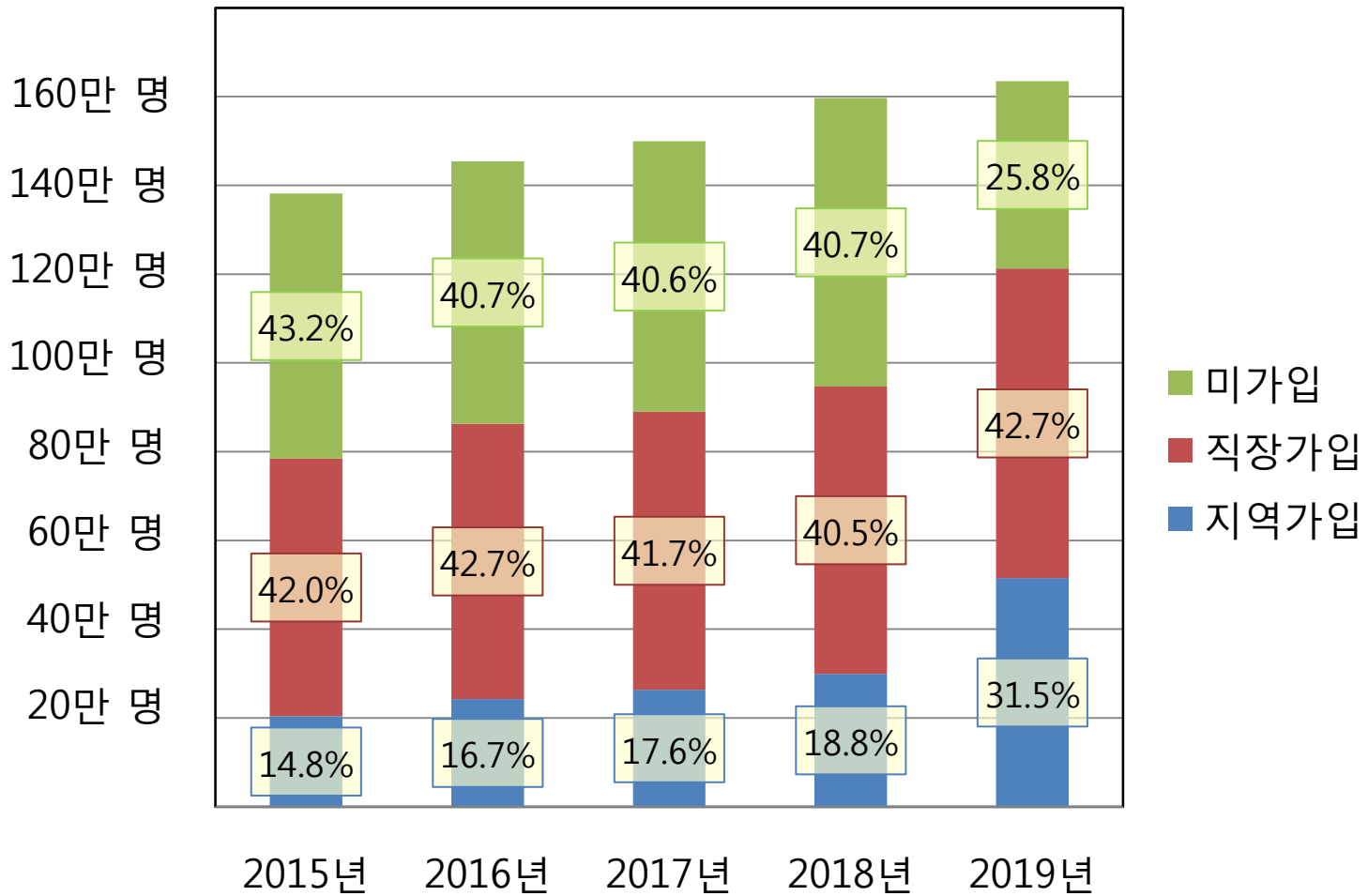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차별적 개정의 근거 3

2017년 말 지역가입자 세대 평균보험료 96,000원 vs. 외국인 세대 평균보험료 75,000원으로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문제. 이에 평균보험료 적용 체류자격을 줄이고, 세대원 인정 가족의 범위 줄일 필요 있음

그러나,

지역가입이 의무가 아니었고,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하고 소득·재산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음
⇒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는 이들이 주로 가입했기 때문에 내국인에 비해 보험료가 낮았을 것

외국적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이주민 건강보험의 문제

1. 낮은 직장가입자 비율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직장 : 지역 비율 = 7 : 3 vs.

이주민 건강보험 가입자의 직장 : 지역 비율 = 6 : 4

- 직장가입에서 제외되는 일용노동자, 가사·간병노동자 많음
- 농업·어업 등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곳
(사업자등록이 없는 곳)에 고용된 경우 많음
- 사업주의 건강보험 가입 미신고 비율 높음
-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 모름

이주민 건강보험의 문제

2. 높은 지역가입 보험료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부과 vs.
이주민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책정된 금액과 전년도 평균
보험료 중 높은 금액을 부과

- 2020년 이주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평균보험료
는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23,080원
- 단, 영주자와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난민인정자와 그 가족 및 미성년 세대주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하되,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부과

이주민 건강보험의 문제

3. 상황에 따른 보험료 경감 없이 체류자격에 따른 경감

내국인은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험료 경감, 미성년자에게는 납부 의무 면제 vs.

이주민은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그 가족 및 종교 비자 소지자만 30% 감면 (유학생은 50% 감면이나, 2021년 2월까지 가입 불가)

이주민 건강보험의 문제

4. 가족등록의 어려움

- 지역가입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 합가 허용
-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불가능한 서류 요구

5. 반복되는 건강보험 공백

-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지역가입 가능 (결혼이민 예외)
- 1개월 이상 출국 후 재입국 시 다시 6개월 후 가입 가능

6. 체납 시 가혹한 불이익

- 체납 시 바로 급여 중단, 완납해도 소급 적용 불허
- 체납 반복되면 체류 연장 불허

얼마면 되겠니?

건강보험제도 내 이주민 차별을 폐지하는 대신,
얼마면 불만 없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건강보험공단...

2019.1.10.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주민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적용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특히, 이주아동에게는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 허용